

(주)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제6차 임시주주총회 의사록

일 시 : 2024년 12월 30일(월) 오후 3시

장 소 :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, 19층 내 회의실

출석주식수: 의결권 있는 총발행주식 4,172,640주 중 4,172,640주(100.00%)

총주주수 1명중

참석주주수 1명

(주)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이하 “본 회사”라 한다)의 의장인 법인이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직무수행자로 선정된 이견회는 심의에 필요한 의결권을 가진 주주들이 소정의 소집절차에 따라 참석(서면의결권 포함)하였음을 확인한 후, 본 주주총회가 상법 및 정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하였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고, “주주총회 자료”를 통하여 부의 안건을 상정하다.

제1호 의안 : 고양성사혁신지구리츠 사업약정서 변경 체결의 건

의장은 의안1. 고양성사혁신지구리츠 사업약정서 변경 체결의 건에 관하여 배부한 주주총회자료를 통하여 설명한 후, 그 승인을 요청한 바, 참석주주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의장은 이상으로 금일 상정의안 전부를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.

위 의사경과의 요령 및 그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법 제373조 및 당사 정관 제 29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의장 및 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다.

2024년 12월 30일

(주)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의 장 및 법인이사 주택도시보증공사



2024년 제6차

임시주주총회 자료

주식회사 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(주)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
2024년 제6차 임시주주총회 자료

◇ 일 시 : 2024년 12월 30일(월) 오후 3시

◇ 장 소 :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, 19층 내 회의실

◇ 안 건

안건 1 : 고양성사혁신지구리츠 사업약정서 변경 체결의 건

안건 1	고양성사혁신지구리츠 사업약정서 변경 체결의 건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□ 관련 규정

정관 제25조(주주총회의 결의사항)

①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,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.

- 3. 자산의 투자·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
- 8. 기타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

□ 안건 개요

- 고양성사혁신지구리츠의 획지2 공동주택 매각결정에 따라 고양성사혁신지구리츠 - 고양시 간 매입·임차 확약을 변경하고, 관련된 사항에 따라 사업약정서를 변경 체결하고자 함

[ 사업약정서 변경내용 ]

제2조(조건의 변경) ① “사업약정서” 제3조에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.

제3조(업무범위 및 역할)

③ “출자신청인”은 “모리츠”가 출자한 법인에게 “도시재생뉴딜리츠” 사업으로 건설된 부동산 중 주거시설에 대한 매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, “모리츠”와 “사업제안자”는 매입거래가 거래당사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“도시재생뉴딜리츠”의 주주로서 “도시재생뉴딜리츠”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,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.

④ “사업약정서”와 별도로 작성한 매입확약서(변경), 임차확약서(변경)에 따라 “사업제안자 및 매입·임차확약인”에 부가된 매입·임차확약 등의 의무는 상기 제3항에 따른 주거시설 매입거래의 성사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주거시설의 매입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, 주거시설부분은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.

첨부 1. 사업약정서 2차 변경(안) 등 각 1부. 끝.